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896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비과세 신설	2

I. 개요

1.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89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4.

(3) 회 부 일 : 2024. 10.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은 조합법인은 그 감면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중 농·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반면,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가 농어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농·수산업협동조합 등과 동일하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차별을 두고 있어 조합법인 간의 조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도 농·수산업협동조합 등과 동일하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두어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비과세 신설

현 행	개정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제4조) ☐ 다음과 관련된 감면액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국가·지자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신 설>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별세액 감면 등 -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열거적으로 규정된 경우	☐ 비과세 대상에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액” 추가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액”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 김상훈의원안 2024. 10. 24.. 발의(의안번호 4896)

☐ 개정안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등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¹⁾하고,

납세의무자의 감면세액·개별소비세액·주식등 양도가액·취득세액·레저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²⁾하고 있음.

또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① 국가·지자체·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감면, ②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③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별세액감면 등을 현행법 제4조에 열거적으로 규정³⁾하고 있음.

1)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1)·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	과세표준	세율
1	「조특법」, 「관세법」, 「지방세법」, 「지특법」에 따라 감면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감면세액	20%
2	「조특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	10%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30%, 10%
5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0.15%
6	「지방세법」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특법」, 「조특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20%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20%

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3.~10., 10의2~10의5, 11, 11의2~11의3, 12. 생략)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합법인 등에 대해 「법인세법」 상의 세율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⁵⁾하도록 하고,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일반적인 법인세 세율과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세율 적용분과의 차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⁶⁾하도록 함.

다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임.

4)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 200억원	20%
200억원 ~ 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5)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절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단서 생략)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6)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세율 20%)를 적용한다.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유사한 영업기반을 갖고 있는 금융협동조합 간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음.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활성화와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대형 금융회사의 농어촌지역 지점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과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음.

둘째, 지역 활성화 등을 통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의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림어업인의 지위향상 및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농어촌특별세법」의 입법목적⁷⁾을 감안하여,

현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조합은 농·수협·산림조합 등 농림어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7)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조합법인으로 신협, 새마을금고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구 또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7